

검사 절차

- ▶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 검사 진행 구두 고지
- ▶ 시험관리관은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나 안경 소지자*를 대상으로 실시
 - * 안경을 상시 착용 중이지는 않지만, 시험시간 중에만 안경을 착용할 목적으로 안경을 소지한 사람
- ▶ **응시자 본인이 착용 중인 안경을 들고 있는 상태로** 시험관리관이 육안으로 검사
 - ※ 시험관리관이 응시자에게서 안경을 직접 건네받아 검사하는 것도 가능

케이스 1

응시자가 안경 검사 진행을 위한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

-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,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시험시간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할 수 있음

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(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.

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(응시자준수사항) 법 제17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
2.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
3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
4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
5.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
6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

케이스 2

시험시간 중 응시자가 스마트안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

- 시험시간 중에도 시험관리관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안경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시험 종료 후 해당 응시자를 시험시행본부로 인솔하여 추가 검사도 진행 가능

케이스 3

시험시간 중 응시자가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(또는 적발되었으나 즉시 제출 및 내용 확인 요청 불응한 경우)

- 확인서 작성 및 응시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 검토 후 시험 결과 통보

※ 실제 참고 사례

1. 시험시간에 스마트폰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시험 관련 자료를 커닝한 모습이 적발된 경우
→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
2. 시험시간에 스마트폰인 휴대 전화를 전원을 켜 채 문제지 아래에 숨기고 있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감독관의 즉시 제출 및 내용 확인 요청에 불응
→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